

〈調查 研究〉

# 大學機關의 財務會計制度 改善研究

—美國大學의 財務會計制度 實態調查를 중심으로—

尹 桂 燮

《目 次》	
1. 序 言	5. 大學會計基準
2. 美國大學의 會計報告基準	6. 財務諸表의 簡略化
3. 資金會計(fund accounting)	7. 結 論
4. 主要 財務諸表	參考文獻

## 1. 序 言

우리나라에 있어서 企業會計制度는 이론과 실무면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으나, 非營利法人의 會計制度는 학계의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實務面에서는 單式簿記를 사용하는 유치한 정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非營利法人 중에서도 특히 대학의 경우에는 그 豫算規模가 학생수의 급격한 증가와 一人當 教育費의 증가로 매년 增大一路에 있으며, 一部大學의 경우는 大企業의 豫算規模에 상당할 정도이다. 이에 따라 大學의 經營上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經營情報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는 大學會計制度의 落後性은 앞으로의 大學教育의 발전에 많은 障隘要因이 된다고 하겠다.

### (1) 研究目的

本 研究는 美國의 발전된 大學會計制度를 調查 研究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는 財務會計制度에 적용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발전된 제도와 우리의 現實間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文化的인 差異를 극복하여 우리나라 大學의 財務會計制度를 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研究資料를 수집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 本 研究는 長期的으로 수행되고, 그 결과는 우리나라 大學에서 活用되어야 하는 바, 효과적인 재무회계제도의 運用은 大學經營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고, 大學의 社會的인 公共性和 信賴性을 높이며, 동시에 文教行政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筆者：서울大學校 經營大學 經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副教授

## (2) 研究範圍 및 方法

本 研究은 長期的으로 行해져야 할 大學의 財務會計制度 研究에 對한 第1段階로서, 美國의 大學會計制度의 調查·分析을 그 主要內容으로 한다. 大學會計制度의 特수성과 施行上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理論分野와 實務分野間의 연결관계와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說明과 圖示로써 內容을 정리하고, 수집된 資料를 토대로 이를 例示하고자 한다.

研究方法은 주로 文獻調查에 의한 것으로서 數個의 美國大學을 訪問하고, 公認會計士法人을 방문하여 決算書와 監査基準을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였다.

## 2. 美國大學의 會計報告基準

美國에는 약 3,000個의 大學校와 大學이 있으며 學生은 800萬이 넘는데, 이들 학교는 동창회, 州政府를 비롯한 많은 一般國民의 支援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이들 이해관계자에게 學校活動을 보고하고, 특히 財務情報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 재무정보는 주로 資金會計(fund accounting)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美國教育評議會(The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는 1953년에 “大學經營”(College and University Business Administration)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는데, 이 중 상당한 부분이 會計와 報告에 對한 기준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1968년에 다시 발간되었으며 1973년까지 大學會計 및 報告基準으로서 가장 권위있는 指針書로 인정되어 일반적으로 “CUBA”라는 약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에 對하여 1973년에 美國의 公認會計士會(AICPA)에서는 大學의 會計制度 監査를 위한 監査指針書(Audits of Colleges and Universities)를 발간하였는데, 이 指針書에는 감사절차에 對한 指針 뿐만 아니라 해당기관에 對한 會計 및 報告基準에 對하여 포괄적인 內容을 정리하고 있다. 大學會計 및 監査委員會(The Committee on College and University Accounting and Auditing)에서 작성한 이 지침서는 1975년에 제 2 권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會計基準委員會(The Accounting Standards Division)에서 발행한 財務會計와 報告에서 財務狀態表(statement of position)가 설명되어 있다. 이 指針書는 全國大學經營者協會(The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 and University Business Officers; NACUBO)) 측에서 作成된 대표자와 美國공인회계사회의 위원들이 共同作業하여 작성되었으며 후술하는 “大學經營서어비스”의 一部가 되었다.

美國의 全國大學經營者協會는 “大學經營서어비스”(College and University Business

Administration Service)를 발간하면서 공인회계사회의 監査指針書도 包括시켰다. 이로써 CUBA와 監査指針書는 “大學經營서비스”로 정리되어 美國大學會計基準으로 되었다.

本 研究에서는 大學의 會計 및 報告基準에서 권위있는 자료인 監査指針書를 주로 인용하여 설명하면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財務諸表의 簡略化를 보충해 설명하고자 한다.

### 3. 資金會計(fund accounting)

美國의 大學會計에서는 전통적으로 資金會計方式을 택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운영자금이 기부금과 같은 제한된 外部援助에 의존하여 왔기 때문이다. 資金會計方式은 이처럼 제한된 財源의 사용을 추적하기 위하여 생겨난 會計制度로서, 企業은 물론이고 다른 非營利機關에서도 이용되고 있지 않다. 資金問題에 특히 신경을 쓰는 이유는 大學이 外部의 재정적 원조에 계속적으로 의존하게 됨에 따라 현재의 제약없는 기부금에서 기금을 축적하여 장래에 는 기금수익을 얻기 위한 자금을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1) 資金의 分類

일반적으로 자금은 5가지 종류로 한정된다.

##### ① 當座資金

- a. 無制限資金(사용목적에 제한이 없음)
- b. 制限資金(사용목적에 제한이 있음)

##### ② 貸與資金

##### ③ 寄附 및 類似 資金

##### ④ 年金 및 生活收入資金

##### ⑤ 施設資金

- a. 資本的 支出
- b. 更新 및 代替
- c. 負債償還
- d. 施設投資

#### (2) 各 資金의 主要內容

이러한 주요 區分은 다시 細分되는데 <表 1>은 A대학의 資金狀態變動表 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당좌 및 시설 자금은 細分되어 있다.

##### ① 當座資金

〈表 1〉 A대학 資金狀態變動表

19×1年 6月 30日

단위: 美貨弗

	당과자금		대여자금	기부및 유사자금	시		자		총 자 금
	무제한	제한			자본지출적	생신및 대채	부채상환	시설투자	
수익 및 기타 증가분									
무제한 당과자금수익	3,385,000								3,385,000
기부금—제한적		400,000	10,000	160,000	65,000				635,000
보조금및계약금—제한적		200,000							200,000
투자수익—제한적		10,000		5,000	20,000	\$ 10,000			45,000
투자이익				150,000					150,000
대여자금수입이자			5,000						5,000
시설설비용 지출								1,000,000	1,000,000
부채청산								170,000	170,000
計	3,285,000	610,000	15,000	315,000	85,000	10,000		1,170,000	5,590,000
지출 및 기타 감소분									
교육 및 일반 지출	2,300,000	550,000							2,850,000
보조기업비용	95,000								95,000
기부자 반환금		10,000							10,000
시설설비용 지출					900,000	100,000			1,000,000
부채상환							170,000		170,000
지급이자							50,000		50,000
시설설비처분								85,000	85,000



당좌자금은 學校의 日常的인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자금이다. 보통 당좌자금은 그 사용에 제한이 없는 것과 외부 집단에 의해 당해년도의 사업용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해년도의 각 事業은 재무제표에서 각각의 列(column)에 표시된다.

制限資金 殘額은 특정년도에 특정한 用途로 허용된 금액으로서 소비되지 않은 부분을 나타내며, 이론적으로 이 잔액은 學校가 특정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반환해야 할 금액이다.

당좌 무제한 자금의 잔액은 이 자금중 理事會에서 남겨 놓은 금액이다. 後述하는 바와 같이 이사회는 당좌 무제한 자금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으며, 어느 시점에 있어서 이 자금의 잔액이 얼마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大學會計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좌무제한 자금의 잔액이 적은 것을 보면 학교의 財務狀態가 나쁘다고 잘못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表 3>에서 보면 160,000弗의 순증가는 A대학의 재무상태가 매우 나쁜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순증가 항목 위를 보면 이사회가 이 자금중 600,000弗을 다른 자금으로 대체시킨 것을 알 수 있다.

### ② 貸與資金

이 자금은 學生 또는 일부 교직원에게 貸與할 수 있는 資金이다. 이 資金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貸與用으로 사용할 수 있는 制限된 기부원금이 기부자금부분에 표시되어야 하며 受入利子가 발생되면 다시 貸與資金으로 증가되어야 한다.

### ③ 寄附資金

이 資金은 다시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a) 寄附基金 : 이 資金은 기부자가 제공한 원금이 영원히 보존되고 오직 원금에서 생기는 利益만 가지고 일반 목적이나 制限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b) 期間附 寄附金(term endowment) : 이 자금은 기부자가 제시한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부 원금을 학교의 특정활동 또는 일반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제공한 資金이다. 期間附 기부금은 보통 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財務諸表에 개별적으로 보고되지 않는다.

c) 準 寄附金(quasi-endowment) : 이 자금은 기부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가 당좌 무제한 자금중 일부를 사용하도록 비축한 資金이다. 準 기부금은 “이사회지정 기부금” 또는 “기부금으로서의 자금”이라고 알려져 있다. 準 기부금의 金額은 財務諸表 또는 그 註釋으로 분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만약 분명히 표시되지 않게 되면 일반 利害關係者의 오해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

④ 年金 또는 生活收入資金

이 자금은 원금으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하고 오직 元金만을 학교에 주는 資金이다. 利益은 일정 기간동안 寄附者에게 제공되며, 학교는 그 기간동안 특정 금액 또는 실제 이익을 기부자에게 支給한다. 이러한 기부금의 원금은 비록 학교에 속하고 있지만, 利益 또는 年金 制限이 사라질 때까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이다. 따라서 이 金額은 報告 目的上 기부 자금 또는 기타 자금과는 구분되어 표시되어야 한다.

⑤ 施設資金

施設資金은 4가지로 細分된다.

a) 資本的 支出 資金(unexpended funds) : 이 자금은 시설 추가 및 현대화를 위하여 사용될 자금이며 施設目的上 대체된 현금 및 기타 투자 자금을 포함한다.

b) 更新 및 代替資金(funds for renewal or replacement)

이 자금은 기존 시설의 갱신 및 대체를 위하여 당좌자금으로부터 대체된 金額을 표시한다. 이 금액은 감가상각과 관련되는데, 財務報告上 資本的 支出과 결합해서 표시되기도 한다.

c) 負債償還資金

이 자금은 대부자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부채상환을 위해 理事會에서 비축한 資金이며 理事會의 決定에 따라 부채상환을 위해 비축되는 자금도 포함한다.

d) 施設 投資 資金 : 이 자금은 土地와 장비를 포함하는 施設原價를 표시한다. 實際原價 또는 기부한 날의 時價로 평가되어 기재된다.

모든 施設 및 固定資產은 施設資金으로 표시된다. 당좌자금은 시설 추가, 갱신 및 대체, 부채상환자금이 당좌자금에서 施設資金으로 대체되는 범위에서의 施設活動을 표시한다. 또한 당좌자금은 당좌자금을 지출하여 구입한 장비가 차후에 施設 純 投資에 부가되어 施設資金으로 기록되는 한도까지의 施設活動을 나타낸다. 本 指針書가 4가지 세분된 자금을 전부 표시하는데 대해, 일부 학교에서는 보고 목적상 대차대조표에서만 細分된 資金의 一部 또는 全部를 결합하여 각 부분의 잔액을 표시하기도 한다.

#### 4. 主要 財務諸表

대학회계에서는 세가지의 주요 재무제표가 사용된다.

① 資金狀態變動表

② 貸借對照表

③ 當座收支變動表

이 밖에 이 재무제표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기타 부속 명세서가 있다.

부속 명세서는 이사회 또는 기타 특정한 利用者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주지만 적절한 정도 이상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財務諸表의 일반 이용자를 誤導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本論에서는 세 가지 주요 재무제표에 한정시켜 설명하고자 한다.

지침서가 會計 및 報告基準에 대해 세워놓은 전제는 교육 기관의 목표는 利潤보다 奉仕이며, 會計 및 報告의 첫째 課題는 당기 순이익의 계산이 아닌 資金의 源泉과 運用에 관한 회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침서에서 의도하는 바는 학교가 당해 회계년도 동안의 收益이 費用을 얼마나 초과했는가를 이용자에게 이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침서의 목적은 단지 “자금의 원천과 운용에 관한 회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大學의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는 이 세 가지 재무제표의 각각에 어떤 유형의 거래가 포함되는지를 인식하고 資金會計基準을 이해하여야 한다. 다음은 각 주요 재무제표에 대한 거래 유형을 설명한다.

(1) 資金狀態變動表

세 가지 재무제표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상태변동표이다. 이 표는 당해년도 동안 學校가 행한 모든 활동을 요약 설명한다.

앞의 <表 1>은 A대학의 자금상태변동표인데, 이 표의 형식은 주로 손익계산서 양식에 따라 作成된 것이다. (예를 들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은 當該年度의 純變動과 일치한다).

이것이 CUBA에서 과거에 추천한 바 있는 자금상태변동표의 양식과 크게 다른 점이다. CUBA추천 형식은 첫 줄에 기초 잔액을 표시하고 다음에 증가가 표시되고 다음에 감소가 기재되어 資金期末殘額이 표시되는 전형적인 자금상태변동표이다. 새로 제안된 양식의 중요성은 당해 기간 동안 학교자금의 純變動을 합리적으로 종합 표시한다는 점이다.

① 총자금(total all funds)

감사지침서의 예시적 재무제표에는 <表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總資金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지침서에도 가로축에 총자금의 구분표시는 제한된 자금의 성격이 분명하게 표시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고 지적되어 있어서 총자금란을 표시하였다.

② 수익과 기타 증가분(revenue and other additions)

이 表는 손익계산서 양식을 사용하지만 ‘수익 및 기타 증가분’이라는 項目을 쓰고 있는



데 ‘기타 증가분’이란 전통적인 會計學上으로는 수익을 구성하지 않으나 특정 자금 잔액에 합해진다. <表 1>에서 보면 ‘기타 증가분’은 시설 설비용으로 1,000,000弗이 지출되었고, 부채상환을 위해 170,000弗이 지출되었다.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수한 收益, 費用을 알기 위해서는 이 재무제표에서 ‘非收益的’ 증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 표에서 어떤 정보는 합계 형식으로 표시된다. 예를 들면 무제한적 당좌자금으로 표시된 3,385,000弗은 무제한적 기부금 및 투자수익을 포함하는 많은 항목의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3,385,000弗에 대한 세부 설명은 當座資金 收支變動表에 나타난다. 이 재무제표는 이용자로 하여금 학교 수입 원천의 세부 사항을 알도록 하게 하는데, 당좌 제한 자기에 표시되는 제한적 기부금은 당해년도에 받아들인 총액을 나타내며, 실제로 소비된 금액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고, 當座資金 收支變動表상에 실제 소비금액의 정확한 액수가 표시된다.

③ 지출 및 기타 감소분: ‘수익 및 기타 증가분’과 마찬가지로 지출 및 기타 감소분에는 여러 가지의 非費用 項目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비용’ 대신에 ‘지출(expenditure)’ 이 사용된 이유를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 ‘지출’은 ‘지급(disbursement)’을 의미하며 ‘비용’은 발생주의에서의 ‘원가(cost)’를 의미한다. 주요 非費用項目은 施設設備에 지출된 1,000,000弗과 부채상환을 위한 170,000弗이다. 이 두 항목 모두 이 표의 ‘수익 및 기타 증가분’ 부분의 다른 세로 項目에 표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익 항목과 마찬가지로 교육 및 일반 지출 2,300,000弗에 대한 세부 사항은 當座資金 收支變動表에 표시되기 때문이다.

④ 대체전 순증가(감소): 監查指針書에 예시된 자금상태변동표에는 들어있지 않는데, 이 금액이 ‘지출을 초과하는 수익 금액’과 비슷한 것을 표시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려 한 것 같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자금간의 대체가 이루어지기 전의 각 자금의 활동내역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체전 당좌 무제한 자금의 순증가는 990,000弗이다. 이 小計가 없다면 이용자는 아마 대체후 순증가인 160,000弗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小計를 넣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對替去來들은 부채상환을 위하여 요구되기도 하며 支出의 성격을 많이 갖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利害關係者가 990,000弗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금액이 이사회에서 支出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기 쉽다고 느낀다. 그러나 지침서에서는 小計를 넣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

### ⑤ 資金間 對替

자금간 대체는 총액계산에서 혼란을 가져오게 되므로 表의 수익 및 지출 부분에서 적절히 구분되어야 한다.

〈表 2〉 A대화 貸借對照表

19×1年 6月 30日

단위: 美貨弗

자	당좌자금		기부 및 유사자금	실	자		총 자금
	무제한	제한			실 경신 및 대체	부채상환 시설투자	
자산							
유형자산	910,000	285,000	310,000	60,000			1,601,000
금부채	930,000			50,000	100,000		1,480,000
권자	18,000						98,000
자산	20,000						20,000
용비	25,000						25,000
小計	1,903,000	285,000	310,000	110,000	100,000		3,224,000
자차			4,215,000				4,215,000
시차			510,000			23,450,000	23,450,000
자금간채권(채무)	(410,000)	(150,000)					
총자산	1,493,000	135,000	5,035,000	110,000	100,000	23,450,000	30,889,000
부채 및 자산액							
유동부채	573,000						608,000
지급성채						170,000	170,000
유동성채	110,000						110,000
수입예치	683,000					170,000	888,000
計						580,000	580,000
장기부채		135,000	2,025,000	110,000		22,700,000	25,230,000
자금제한	810,000		3,010,000		100,000		4,191,000
계한	810,000	135,000	5,035,000	110,000	110,000	22,700,000	29,421,000
무제한	1,493,000	135,000	5,035,000	110,000	100,000	23,450,000	30,889,000

準寄附資金 投資利益의 일부를 기부자금으로부터 대체할 경우에 대체로서 적절히 표시되고 收益項目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많은 대체가 表에서 보고되기는 하나 총 자금란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대체가 학교 전체의 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⑥ 當該年度 純增加(減少) : 각 자금별 純變動을 알려주며 총 자금란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순변동을 알려준다.

기업과 같이 '비용을 초과하는 수익' 대신 이러한 제목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금간의 對替가 오해를 일으켜서 지침서에서는 어느 자금에서의 '純變動'이 '支出을 초과하는 수익'을 나타내지 않도록 할 科目을 고안해야 했다. 이것은, 4가지 施設資金의 사용과 함께, 非收益的 非支出的 去來(부채상환, 시설설비지출)가 '支出을 초과하는 수익'이 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科目이 총 자금란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支出을 초과하는 收益'이라는 科目도 타당할 것이다.

### (2) 貸借對照表

지침서에서 예시되고, 대부분의 학교가 따르는 것과 같이 대차대조표는 資產이 왼쪽에, 負債와 資金 殘額은 오른쪽에 있는 전형적인 양식으로 되어 있다. 또한 주요 자금의 유형은 대차대조표에 별도로 표시된다. 지침서에서는 '만약 자금간 借入을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公示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列을 횡으로 合計하여(cross footing the columns) 합계를 내는 것에 대하여는 경고하고 있지만, 채택가능한 대체안으로서 列로 表示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表 2>에 사용된 형식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나 학교의 전 활동을 개관하기에 편리하다. 동시에 자산 대부분이 제한된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列로 된 형식은 일반 독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 (3) 當座資金 收支變動表

이 표는 當座資金—대학이 1차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가능한 자금—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表示한다. 학교는 당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한적, 무제한적인 자금 전부를 사용하게 되므로, 이 表에는 두 유형의 자금 모두를 포함시켜야 한다(<表 3> 참조).

그러나 이 표가 기업의 損益計算書와 같이 당해년도 활동의 결과인 순이익이나 순손실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상 이 표는 당해년도의 무제한적 활동 전부를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 이 表에는 당면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준비되는 이사회 결정 자금(예 : 이사회 결정 기부 자금)과 같이 1次的인 目的에는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제한된 자금 등을 포함하는 거래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표는 1次的 活動에 사용된 수익 및 지출과 이사회 결의나 외부 집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다른 자금으로 대체된 금액을 표시하게 된다. 이 표에서 보고되는 모든 금액은 자금상태변동표에 총액으로 표시된다.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 표를 기업회계상의 收益·支出表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것은 이 표가 傳統的 會計 概念에서는 收益·支出去來가 아닌 거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이 표는 會計學的으로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좀 더 의미있는 표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① 가로項目 : 세 개의 列 項目이 이 표에서 사용된다. 즉 당좌 무제한, 당좌 제한, 小計이다. 당좌 무제한 列에 나타나는 금액은 對替 收入·支出을 포함하는 당해년도 당좌 무제한 자금의 모든 활동을 나타낸다.

이 표의 收益과 支出의 주요 범주는 자금상태변동표에 역시 나타난다. 예를 들면 2,300,000弗의 총 '교육 및 일반 지출'은 <表 1>에 同額으로 표시된다. 小計가 없기는 하지만 당해년도에 대한 순변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 보려면 총 당좌수입 3,385,000弗에서 2,300,000弗을 차감하면 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액이 1,085,000弗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制限資金 : 制限資金은 '수익'으로 보고되는 금액이 制限된 목적으로 소비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혼동된다. 550,000弗의 수익과 550,000弗의 지출 금액을 보면 대학에서는 제한된 수익을 단지 제한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범위까지만 보고하는 관습을 따르고 있다. 예를 들면 자금상태변동표에 收益으로 보고된 금액은 550,000弗이 아닌 610,000弗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制限資金에 나타나는 숫자가 더욱 복잡해지는 것은 당해년도 제한 자금 잔액에 '순증가'를 보고할 필요성과 자금상태변동표에 보고된 순증가와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두 재무제표의 制限資金 純增加는 50,000弗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좌자금 수지변동표에는 단지 수익만이 보고되고, 기타 변동액은 실제 소비액이므로 당해년도 동안 제한자금의 순변동을 반영할 '조정계정'이 있게 된다. 이것은 '수익으로의 대체를 초과하는 제한된 收入金額'으로 표시된 60,000弗을 <表 3>의 하단에서 볼 수 있다. 이 숫자는 '기부자 반환금'과 함께 당해년도 '순증가'를 상쇄시킨다. 總計란은 총 당좌 자금 활동, 예를 들면 경상적으로 사용가능한 자금에 의해 운용된 당해년도 총 활동을 이용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당좌자금 수지변동표상에서 기재된다.

③ 無制限의 收益 : 無制限列을 보면 이용자는 수익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을 얻게 된다. 모든 無制限의 기부금, 遺贈, 투자수익 및 기타 수익은 이 난에 기재되어야 한다. 하나의 예외는 후술하는 資本利得이다. 만약에 학교가 연말의 마지막 날에 기대하지 않던 막대한

〈表 3〉 A대학 당과자금 수지변동표

19×1年 6月 30日

단위 : 美貨弗

	당 과 자 금		計
	무 제 한	제 한	
수			
교 육 및 일			
학 생 수 업	1,610,000		1,610,000
정 부 지 출	400,000		400,000
정 부 보 조		200,000	200,000
기 부	900,000	340,000	1,240,000
기 부 수 익	350,000	10,000	360,000
수 익 사 업	125,000		125,000
총 당 과 수 익	<u>3,385,000</u>	<u>550,000</u>	<u>3,935,000</u>
지 출 및 의 무 적 대 체			
교 육 및 일			
강 연 의 구	1,100,000		1,100,000
학 술 지 원	300,000	550,000	850,000
학 생 보 조	200,000		200,000
학 생 보 조	100,000		100,000
시 설 운 전 및 유 지	500,000		500,000
機 關 補 助	100,000		100,000
	<u>2,300,000</u>	<u>550,000</u>	<u>2,850,000</u>
의 무 적 대 체			
원 금 및 이 자	200,000		200,000
경 신 및 대 체	50,000		50,000
총 교 육 및 일 반 지 출	<u>2,550,000</u>	<u>550,000</u>	<u>3,100,000</u>
수 익 사 업			
지 출	95,000		95,000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의무 적 대체	20,000		20,000
총 지출 및 의무적 대체	<u>2,665,000</u>	<u>550,000</u>	<u>3,215,000</u>
기 타 대 체 및 증 가 본 수 익으로의 대체를 초과하 는 제한된 收入 금액		60,000	60,000
기 부 자 반 환 금		(10,000)	(10,000)
다른 자금으로 대체된 무 제한 기부금	(600,000)		600,000
준기부금 수익 배분 부분	40,000		40,000
자 금 잔 액 순 증 가	<u>160,000</u>	<u>50,000</u>	<u>210,000</u>

기부금을 받아, 이사회 결정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收益欄에 이 기부금의 收入을 보고하여야 한다. 지침서의 발표 이전에는 이런 기부금은 직접 자금상태변동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침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난에 모든 무제한적 투자 수익(예: 배당 및 이자)은 발생년도에 보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④ 지출 및 의무적 대체: 의무적 대체는 내부 또는 외부 집단과의 계약에 따라 필요한 대체이다. 가장 전형적인 의무적 대체는 부채이자, 부채원금상환과 같은 것이다. <表 3>에서는 이러한 원금과 이자의 액수가 220,000弗(교육 지출에 200,000弗, 기타 보조 활동에 20,000弗)이다. 또한 몇몇 기관은 특정금액을 갹신 및 대체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A대학은 의무적 대체를 50,000弗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는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회계개념에 있어서의 支給은 아니다. 은행 차입금이 收益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負債償還은 비록 현금지출을 필요로 하나 회계 개념상의 費用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적 대체는 전통적 개념에서 지출을 초과하는 수익의 금액이 얼마인가를 알기 어렵게 한다. 이것은 이 表에 나타난 금액을 조정하지 않는 한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表는 支出을 초과하는 수익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좌자금 활동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의무적 대체는 명백히 可用當座資金을 줄이는 활동을 나타낸다.

또한 '보조 활동'에는 의무적 대체가 없다. 보조 활동은 학교의 주요 목적에서 벗어나는 활동을 말한다. 전형적인 보조 활동은 기숙사 시설과 식당운영 등이다. 기숙사는 장기의 차입 활동과 기숙사비를 반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表 3>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러한 보조 활동은 분리시켜 보고된다.

⑤ 기타 대체 및 증가: 의무적 대체에 추가하여 이사회는 기타 자문에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러한 '기타 대체'는 당좌자금 收支變動表의 下段에 나타난다. 의무적 대체와 기타 대체 사이의 구별은 어떤 대체가 요구된 것이며, 어떤 것이 순수한 이사회 결정에 의한 것인가를 알게 한다. A대학의 경우 두 가지 기타 대체가 있다. 600,000弗의 무제한적 기부금을 기타 자문에 대체한 것과 총수익 개념하에서 40,000弗을 기부 및 유사 자금에서 이사회 결정 기부 자금으로 대체한 것이다.

⑥ 支出을 초과하는 收益金額: 당해년도의 支出을 초과하는 收益 금액이나 支出 및 기타 대체를 초과하는 收益금액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되는 유일한 合計는 '자금잔액 순증가'인 것이다. '순증가'로부터 어떤 결론을 도출하려는 것은 잘못될 염려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純額을 이사회에서 조정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사회에서 조정한 것이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지침에서는 '지출 및 의무적 대체를 초과하는 收益'이라는 항목을 사용하는 것을 특별히 금지하지는 않으며, 이것

은 어떠한 기관에서는 고려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계 개념상 그 자체가 支出과 非支出의 혼합인 의무적 대체에는 당연히 그 순 금액조차도 그 중요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다. 支出 및 의무적 대체를 초과하는 收益의 순 금액은 '資金 殘額의 순증가'라는 것보다는 더 정확한 對應이 될 것이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이 표는 당해년도의 활동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당해년도 순증가보다 총 지출 및 의무적 대체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표는 상대적으로 덜 유용하다. 그러나 자금상태변동표에서 보여진 收益 및 支出의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준다는 점에서는 유용성이 있다. 當座資金 收支變動表는 제한된 유용성 때문에 이 표에 표시된 정보는 다른 방법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새로운 表로 代替될 수 있을 것이다.

## 5. 大學會計基準

大學에 관한 감사지침서에서 규정된 會計基準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1) 發生主義

지침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會計原則에 준거하여 작성된 財務諸表에는 회계의 발생주의가 정상적으로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투자수익은 만약 기록되지 않은 금액이 중요하다면 발생주의에 의해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여름학기에 관련된 收益 및 支出은 여름학기가 해당하는 회계년도에 보고되어야 한다.

발생주의 회계에 있어서 假定은 支出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이 決算日 현재에 들어와 있거나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과거에 어떤 기관에서는 실제 수령일에 관계없이 구입 지시서 또는 기타 지시서가 발행된 때에 支出로서 기록하는 정부회계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것이 豫算書會計(appropriation accounting)이다. 지침서에서는 그러한 금액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차대조표에 支出 또는 負債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학교가 당좌무제한 자금 잔액의 일부를 지정 또는 할당하고 싶다면 그래도 되나 그러한 事項은 대차대조표의 資金殘額에 기재되어야 한다.

### (2) 無制限的 寄附金

모든 무제한적 기부금, 遺贈은 受入年度에 당좌 무제한 자금의 收益으로 기록된다. 이사회가 이러한 무제한적 기부금 및 유증의 어떤 부분을 '이사회 지정 기부금'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유이나, 그러한 기부금은 당좌 무제한 자금으로 우선 보고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

고된 후, 이사회가 원한다면 이러한 자금은 寄附 및 類似 資金으로 대체될 수 있다.

### (3) 當座 制限 寄附金

경상 목적용 제한 기부금은 資金狀態變動表에 전액 보고된다. 그러나 當座資金 收支變動表에 收益으로 보고되는 당좌 제한 기부금의 금액은 당해년도 동안 이러한 제한된 목적으로 실제 소비된 금액일 뿐이다. 따라서 이 표를 보면 당해년도에 수입된 총 금액이나 실제로 소비된 금액을 알 수 있게 된다.

### (4) 기타 제한된 기부금

법률적으로 제한된 기부금의 모든 종류는 그들이 관계된 자금을 직접적으로 보고될 것이다. 기부자가 기금을 기부하게 되면 그것은 이 항목에 직접적으로 보고될 것이다.

### (5) 담보물

지침서에는 담보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가 그러한 금액을 기록해도 되지만 금액이 중요하다면 決算日 현재로 회수 안 된 담보금액은 註釋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 (6) 무제한 자금의 投資 收益

모든 투자 수익(배당 및 이자)은 收益項의 당좌 무제한 자금을 직접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지침서가 발간되기 이전에는 收益 安定 充當金 사용이 허용되었으나, 이러한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투자 수익은 發生年度에 보고되어야 한다. 기부자금 투자 수익은 기부자가 투자 수익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無制限의 收益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무제한 기부 자금 수익은 당좌 무제한 자금을 직접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 (7) 制限 投資收益

모든 제한된 투자수익은 이러한 투자수익이 관계된 자금을 직접적으로 보고된다.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투자된 잉여시설자금에서의 투자수익은 시설자금을 정상적으로 보고 될 것이다.

### (8) 投資 利益 및 損失

이익 및 손실은 이익을 발생시키는 투자자산의 時價의 조정항목으로 고려되며, 이익을 발생시키는 투자자금으로 자금상태변동표에 보고된다. 따라서 이것은 '기부 및 유사자금'의 일부로 보고되는 이사회 지정 기부금의 이득은 자금상태변동표의 기타 증가란에 보고되는 것을 의미한다.

大學이 투자 자산을 時價로 평가하는 경우, 실현되지 않은 評價 增·減의 금액은 실현



이익·손실과 같은 방법으로 보고된다.

### (9) 投資資產의 評價

指針書에서는 대학이 그의 투자 자산을 時價 또는 原價로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과거에는 투자자산은 단지 原價로 평가되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의 시가로 평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은 학교회계에 권고해 보고 싶은 중요 변동사항이다. 만약 학교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투자 자산 모두를 時價로 평가하여야 한다. 일부는 時價로 일부는 原價로 기준이 서로 다르게 평가할 수 없다.

### (10) 總 收益 概念

이사회에서 기부 및 유사 자금에서의 實現 또는 未實現 收益을 당좌 무제한 자금으로 대체하고자 한다면(이사회에서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한 대체는 당좌자금 수지변동표의 비의무적 대체란에 표시되어야 한다. 자금상태변동표에서도 이 대체는 對替項에 표시된다. 둘 중 어느 재무제표에서도 이러한 대체를 수익항에 대체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40,000弗의 유사 및 기타 자금에서의 대체가 당좌 무제한 자금으로 표시되는 <表 1>에서 볼 수 있다.

### (11) 固定資產 會計

지침서에서는 고정 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하여 CUBA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모든 고정 자산 구입은 자본화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대학이 당해년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費用化'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12) 減價償却會計

지침서에서는 감가상각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대학의 과거 방식을 다시 주장하고 있는데 감가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設備를 구성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당좌자금 수지변동표나 무제한 당좌 자금 변동표에 보고 되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재무제표가 당기순이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의 원천·운용에 대한 회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 표들은 영업비용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당좌자금의 支給 및 對替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감가상각을 할 경우에는 감가상각충당금은 貸借對照表에 기재하고, 減價償却費는 시설자금에서 세부적으로는 시설 자금 투자 항목의 잔액변동표에 기재하여도 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침서에서는 감가상각비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反對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위에서 인용된 마지막 문장에서 減價償

却充當金은 자금상태변동표의 시설자금에 감가상각비를 보고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을 알아야 한다. 감가상각이 이러한 식으로 보고되고, 총자금에 계산된 경우에는 감가상각은 결과적으로 재무제표에 유효하게 표시된 것이다(〈表 4〉 참조).

### 6. 財務諸表의 簡略化

지금까지 설명된 會計 및 報告基準은 지침서에서 권고한 것이며 대부분의 大學에서 따르고 있다. 비록 樣式은 기술적으로 정확할지 모르나 會計나 학교 회계에 대해 지식이 없는 평범한 일반인이 당해년도 동안 어떤 사실이 발생하였는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서 이 재무제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그 어려움의 대부분은 總計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인데 각 자금은 개별항을 사용하여 이를 종합하기 전에는 알기 어렵다. 이것은 受託 資金이 기부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는가를 알아야 하는 학교의 法的인 責任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책임 때문에 학교가 대중에게 각 자금 類型別로 자세한 개별 재무제표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학교의 재무제표를 전체적인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양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견해로 재무제표를 보다 간략히 해서 작성하자는 意見이 있다. 本節은 그로스 와 와르쇼어(M.J. Gross, Jr. and W. Wars-huuer, Jr.)의 “재무제표의 간략화”라는 意見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대학의 일련의 재무제표가 활동 결과를 충분히 보고하지 못한다는 전제는 문제가 있다. 대학이 상업적인 의미에서 ‘利益’을 창출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활동을 유지할 정도의 충분한 자금을 상당한 기간동안 보유할 것은 기대되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대학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현재 많은 私立學校가 재무면에서 곤경에 빠져 있다. 더욱이 지침서에서 규정된 대학 재무제표는 대학의 운영비에 대하여 이용자나 受託者에게 유용한 정보를 거의 주지 못한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대학은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데 대학교내의 다른 單科 大學들과 다른 부서들 중에서 수탁자는 기관의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각 類型別 費用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들은 학교가 책임을 지고 있으나 판단을 내릴 방법이 없게 된다.

#### (1) 資金收支狀態變動表

① 包括主義로 표시된 業務에 관한 表(An All-Inclusive Statement of Activities)

〈表 4〉는 B 대학의 포괄주의에 의한 收支 및 資金狀態變動表이다.

〈表 4〉 B대학 收支 및 資金狀態變動表

19×1年 6月 30日

단위 : 美貨弗

				무	계	한	계	한	計
영	업	수	익						
수	업		료	1,610,000					1,610,000
정	부	보	조	400,000					400,000
연	구	보	조				190,000		190,000
보	조	활	동	125,000					125,000
총	영	업	수	2,135,000			190,000		2,325,000
영	업	비	용						
교			육						
공			학	930,000					930,000
예			술	410,000					410,000
경			영	625,000					625,000
조			사	300,000			550,000		850,000
지			원						
행			경	495,000					495,000
자	금	모	금	90,000					90,000
보	조	활	동	95,000					95,000
총	영	업	비	2,945,000			550,000		3,495,000
	수익을	초과하는	영업비	(810,000)			(360,000)		(1,170,000)
기	타	수	익						
기	부		금	900,000			635,000		1,535,000
투	자	수	익	350,000			47,000		397,000
실현 또는 미실현	평가증						150,000		150,000
총	기	타	수	1,250,000			832,000		2,082,000
비	용	초	과	440,000			472,000		912,000
기	초	자	금	26,671,000			1,838,000		28,509,000
자	금	간	대	(220,000)			220,000		
기	말	자	금	26,891,000			2,530,000		29,421,000

② 制限 對 無制限 : 이 포괄주의로 표시된 표에서 우리는 활동을 두가지로 나누었는데 제한 項에는 外部人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모든 자금이 포함된다. 이것은 당좌 제한 자금, 대여자금, 實際寄附 資金과, 외부인에 의해 사용제한된 시설자금(시설투자 이외의)을 포함한다. 施設投資는 이러한 자산이 기관의 구성 목적—즉 교육 목적—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無制限 資金으로 포함된다. 구입에 사용된 기부금에 원래는 제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자산은 구입이 인정된다. 따라서 고정자산은 '무제한' 사용으로 인식된다.

이렇게 자금을 두 종류—무제한과 제한—로 나누어 간단히 표시하는 利點은 이용자가 혼동하지 않고, 신속히 총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당해년도의 수익 비용 중 이사회가 일부 통제밖에 할 수 없는 거래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公示가

있게 되는 셈이다.

③ 총액란 : 총액란에서는 無制限 및 制限列을 통합한 것이다. 이것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당해년도의 總活動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合計란을 넣지 않아야 된다는 논의도 많지만, 이러한 논의는 이용자들이 대학의 전활동을 파악해야 되는 필요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된 수익과 비용의 일정액은 사용제한이 되어 있어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④ 機能的 報告 : 이 표는 기능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모든 비용은 프로그램 또는 기능에 의해 구분된다. 대학의 제일 목적은 教育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금액을 B대학에서 개설된 세가지 개별 프로그램(예 : 공학, 미술, 경영)을 나타내는 세 범주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연구 및 대학의 기타 主要活動에 사용된 금액을 표시하였다. 어떤 비용들은 학교의 전반적 관리에 관련되며, 이들은 開發費와 같이 개별적으로 표시되기도 한다.

⑤ 減價償却 : 비록 이 표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500,000弗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면서, 이 금액을 각각의 프로그램에 배분하였다. 감가상각에 대하여는 전통적으로 贊·反의 논의가 있지만, 감가상각비는 원가로서 반영되어야 한다. 대학의 감사지침서에서는 부채상환(예 :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당좌 무제한 자금에서 충당하도록 학교에 요구하고 있다. 부채상환은 일반적인 생각과 같이 '費用'이 아니며, 이것은 간략화된 재무제표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500,000弗의 감가상각비를 포함시켰으므로, 단순화된 재무제표에는 <表 1>에 반영된 85,000弗의 고정자산 상각이 표시되지 않는다.

⑥ 비용을 초과하는 수익금액 : 이 표에는 당해년도의 비용을 초과하는 수익 금액이 분명하게 표시된다. 수탁자와 기타 관련독자들이 당해년도의 순 결과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⑦ 기타 수익을 제외한 活動收益 : 이 표에서 활동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활동수익을 費用差減後의 기부금 및 투자수익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기타 수익은 '비용을 초과하는 수익금액'에 보고된다.

⑧ 수입년도에 기록되는 制限된 寄附金 : 지침서에서는 당좌자금수지변동표 상에 단지 당해년도에 소비된 制限된 收益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전에 지적된 바와 같이 상당한 혼동을 가져온다. <表 4>에는 제한된 수익이 당해년도 동안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보고되게 되어 있다.

⑨ 자금간의 對替 : 모든 무제한 자금을 하나의 列에 포함시킴으로써, 자금간의 대체 항목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 경우 유일한 對替金額은 負債償還用 제한자금으로 비축되는

〈表 5〉 B대학 機能別 費用表  
19×1年 6月 30日

단위: 美貨弗

	교 육 부 분		연 구	보 조 부 분			총 비 용	
	공 학	예 술		경 영	관	리		자 금 증 가
급여 및 후생 비	450,000	180,000	350,000	720,000	275,000	40,000	30,000	2,045,000
장 학	50,000	10,000	20,000					80,000
감가상각 및 설비 운영비	150,000	100,000	100,000	70,000	50,000	10,000	20,000	500,000
제한 시설 운영비	200,000	70,000	95,000	50,000	50,000	25,000	10,000	500,000
감가상각 비	30,000	10,000	10,000					50,000
도 모	40,000	30,000	40,000	10,000	40,000	15,000	25,000	200,000
이 품					50,000			50,000
자 차					30,000			70,000
기 타	10,000	10,000	10,000					
	<u>930,000</u>	<u>410,000</u>	<u>625,000</u>	<u>850,000</u>	<u>495,000</u>	<u>90,000</u>	<u>95,000</u>	<u>3,495,000</u>
학 생 수	350	250	300		900		900	900
학생 1인당 비용	2,657	1,640	2,083		550		105	2,839*

\* 차감모금액비용과 연구비는 제외

금액이다.

(2) 費用的 機能的 分析

<表 5>는 費用項目을 收支 및 資金狀態變動表(<表 4>)에 보고되는 기능적 비용으로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다.

收支 및 資金狀態變動表上的의 각 기능별 항목은 기능별 비용표에 역시 나타나며 양 표의 숫자는 合計가 일치한다.

표시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비용항목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기능별 구분에 포함된 비용에 대한 상당한 정보가 제공된다. 이것은 일반 이해관계자에게 이러한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할 기회를 제공한다.

① 前年度와의 比較: 이 표에서는 전년도와 數値를 비교하지 않았으나 표시하려면 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는 전년도와 비교되는 비용항목에 대한 두번째 '합계비용' 열이 있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의 밑에서 표시되는 단위 비용 정보는 다음 해에도 역시 표시될 것이다.

② 單位費用 情報: 이 표에 포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는 각 기능 항목의 교육 및 보조활동에 대한 單位費用이다. 或者는 이러한 개별 단위비용자료가 대학에 대한 적절한 자료인가에 대하여 논박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단위비용기준에 의하여 표시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3) 貸借對照表

<表 6>은 B대학의 대차대조표를 나타낸다. 이것은 수지 및 자금상태변동표에 표시된 방법을 따르고 있다. 이 표의 자금잔액 난은 사용목적에 따라 무제한 및 제한 자금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무제한 자금 잔액에는 시설자금투자액(23,450,000弗)과 투자자금(3,010,000弗)이 있다. 이것은 이용자에게 자금잔액이 이용되고 있는가를 알게 하여 준다. 또한 經常的으로 이용가능한 금액은 단지 431,000弗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표의 합계열 사용에 반대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탁자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可用總資源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 財務狀態變動表

이러한 간략화된 재무제표는 부족한 점도 있다. 이 표들은 이용자에게 수익 비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무적 거래나, 당해년도에 발생한 자금잔액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주지 않는다. 예를 들면, 施設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용된 자원이 어떻게 자금 조달되었는가에 대한 정보는 없다. 반대로 AICPA 감사 지침서에의 자금상태변동표(<表 1>)에서는 이

〈表 6〉 B대학 貸借對照表

19×1年 6月 30日

단위 : 美貨弗

	무	제	한	제	한	합	計
資							
유 동 자 산							
현 금	1,220,000			381,000			1,601,000
단 기 투 자	1,480,000						1,480,000
받 을 채 권	18,000						18,000
학 생 대 여 금				80,000			80,000
기 타 유 동 자 산	45,000						45,000
유 동 자 산 합 계	2,763,000			461,000			3,224,000
장 기 투 자 (時 價)	2,146,000			2,069,000			4,215,000
시 설 자 산							
토 지	500,000						500,000
토 지 개 량	2,900,000						2,900,000
건 물	29,675,000						29,675,000
구 축 물	4,660,000						4,660,000
	37,735,000						37,375,000
감 가 상 각 총 당 금	(14,285,000)						(14,285,000)
순 시 설 자 산	23,450,000						23,450,000
총 자 산	28,359,000			2,530,000			30,889,000
負債 및 資 金 殘 額							
유 동 부 채							
지 급 채 무	608,000						608,000
수 입 료 저 축	110,000						110,000
유 동 성 장 기 부 채	170,000						170,000
유 동 부 채 합 계	888,000						888,000
장기부채, 19×2-×5만기	580,000						580,000
부 채 총 계	1,468,000						1,468,000
자 금 잔 액							
당 해 년 도 사 용 가 능 액	431,000						431,000
시 설 자 금 투 자	23,450,000						23,450,000
기 부 자 금	3,010,000			2,025,000			5,035,000
기 타 제 한 자 금				505,000			505,000
	26,891,000			2,530,000			29,421,000
부채 및 자금잔액총계	28,359,000			2,530,000			30,889,000

러한 종류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준다.

중요한 非收益的, 非費用的 去來가 발생하는 경우, 註釋에 상세하게 기록하거나, 별도의 재무상태변동표에 포함시켜야 한다. 재무상태변동표는 기업회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예를 들 필요가 없다.

## 7. 結 論

이상에서 美國公認會計士協會의 대학회계 및 감사위원회가 마련한 대학감사지침서를 중심으로 대학회계를 설명하였다. 내용의 정리상 회계의 최종결과인 財務諸表를 사례로 하여 설명하였다. 미국 대학에 있어서 이러한 指針書에서 제시한 내용을 많은 大學이 따르고는 있지만 한편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도 한다. 本論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대표한 그로스 와 와르쇼어(M.J. Gross Jr. and W. Warshauer Jr.)의 간략화한 대학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개선된 의견을 다시 정리하였다. 그러나 필자들도 인정했듯이 傳統的인 大學財務諸表의 관점에서는 簡略化된 財務諸表에 약점이 있다.

이 표는 收益·費用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去來나 당해년도에 발생한 資金殘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指針書가 제시한 財務諸表보다 못하다. 그러나 本論에서 여러번에 걸쳐 주장했듯이 기부금의 受託者나 一般利害關係者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보다 간략화된 재무제표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會計學을 배우지 않은 이해관계자들에게 현재 指針書에서 제시하는 財務諸表는 너무 복잡하고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까지 한다. 재무제표의 기본목적은 情報提供이라고 한다면 이용자들이 손쉽게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美國의 大學會計가 안고 있는 基本課題이다. 물론 減價償却費의 計上과 같이 과거의 計上反對主張이 서서히 計上을 贊成하는 方向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本論을 정리하면서 느낀 것은 앞으로의 美國 大學會計가 財務諸表를 보다 간략히 하면서 지금과 같은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非營利機關으로서의 學校가 '利益'을 創出하지 않기 때문에 資金의 配分과 使用의 확인에 두었던 것을 이제는 管理의 效率化를 위해서 單位費用計算과 같은 원가개념을 응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너무 隔差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本 調査研究를 통해 美國大學의 會計制度의 실태가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우리나라의 大學會計制度에 適用할 수는 없다. 이 보고는 단지 우리나라 大學의 會計制度를 改善하는 方向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다.

그러나 大學教育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會計의 전문성 때문에 흔히 소외시키는 이 분야를 연구·개척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자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大學의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를 계속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각계의 인식과 非營利法人의 會計制度



를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文教行政에 있어서도 大學의 會計制度 改善은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의 장기적인 進行은 우리나라 會計學의 다양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 參 考 文 獻

- (1)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Report of the Committee on Accounting Practices of Not-For-Profit Organizations," *The Accounting Review*, Supplement to Vol. XLVI, 1971, pp.80-163.
- (2)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College and University Business Administration*. Rev. Ed. Washington, D.C.: Author, 1968, p.311
- (3)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Planning for Effective Resource Allocation in Universities*, Prepared by Harry Williams of the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Washington, D.C. 1966, p. 88
- (4)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ccounting Standards Division, *Audits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including Statement of Position*, New York: Author, 1973, 1975, p.137
- (5)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Public School Costs*, New York: Author, 1963, p.28
- (6) Anthony, R.N. and Herzlinger, R.E., *Management Control in Non-profit Organizations*, Homewood, Ill.: Richard D. Irwin, 1975, p.355
- (7) Bastable, C.W. "Evaluating Performance of Not-For-Profit Entities," *Journal of Accountancy*, Jan. 1973, p.32.
- (8) Gross, Jr., M.J. and W. Warshauer, Jr., *Financial and Accounting Guide for Non-Profit Organizations*, 3rd Ed. John Wiley & Sons, 1979, pp.201-232.
- (9) Henke, E.O., *Accounting for Non-Profit Organizations*. 2nd Ed. Belmont, Calif.: Wadsworth Publishing Co, 1977, p.211.
- (10) Henke, E.O., "Evaluating Performance Not-For-Profit Organizations," *Journal of Accountancy*, Jan. 1973, p.34.

- (11) Mitchell, Herberts S., *Manual for School Accounting*, Danville, Ill.: Interstate, 1961, p. 101.
- (12)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 and University Business Officers, *Annotated Tabulations of College and University Accounting Practices*. Washington: Author, 1964, p. 55.
- (13)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 and University Business Officers, *College and University Business Administration*. Washington, D.C.: Author, 1974, p. 267.
- (14)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 and University Business Officers, *College and University Business Administration-Administrative Manual*. Washington, D.C., 1974.
- (15)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 and University Business Officers, *Planning, Budgeting and Accounting*. Prepared by Peat, Marwick, Mitchell & Co. Washington: Author, 1970, p. 149.
- (16) Peat, Marwick, Mitchell & Co. *Planning, Budgeting and Accounting*.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 and University Business Officers, 1970, p. 149.
- (17) Piersall, R.W. "Depreciation and the Non-profit Organization," *New York Certified Public Accountant*, Jan. 1971, pp. 57-65.
- (18) Scheps, C. and Davidson, E.E., *Accounting for Colleges and Universities*. Rev. Ed.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70.
- (19) Snyder, P.C. and Hogan, E.E., *Cost Accountability for School Administrators*, West Nyack, N.Y.: Parker Publishing Co. 1975, p. 222.
- (20) Swanson, J.E., Arden, W., and Still, H.E., Jr., *Financial Analysis of Current Operations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Ann Arbor, Mich.: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Michigan, 1966, p. 443.
- (21) Taylor, P.J. and Granville, K.J., *Financial Management of Higher Education*, New York; Coopers & Lybrand, 1973.